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교육위원회규정

2017. 01. 25.제정
2023. 05. 11.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볼링협회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 협회의 감독·코치양성 및 연수교육 등 경기력향상을 위한 교육관련 사항을 검토·심의·집행하고 볼링 지도자 양성에 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볼링 감독·코치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
2. 1급, 2급 볼링코치 양성 교육
3. 볼링교재 발행에 관한 사항
4. 코치양성 교육을 위한 교재 발행
5. 볼링경기 향상에 관한 제반 교육
6. 기타 볼링코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약간인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05. 11.>

④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신설 2023. 05. 11.>

⑤ 소위원회는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05. 11.>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

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한볼링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23. 05. 11.>

제12조(의무사항) 위원호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신설 2023. 05. 11.>

제13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조개정 2023. 05. 11.>

제14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조개정 2023. 05. 1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